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안

의안 번호	3 - 215
----------	---------

제출년월일 : 2000. 5. .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총 입장료의 30%를 사용료로 할증하여 적용하던 것을 영화상영에 한하여 축소 적용토록 조정하여 대중공연 예술의 활성화 도모
- 실외 수영장의 입장료를 소폭 인상하여 적자운영 개선

2. 주요골자

가.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기본사용료를 포함하여 총 관람수입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던 것을 영화상영에 한하여 적용토록 축소 조정함(안제12조제3항)

나. 수영장 입장료를 소폭 인상함(안별표 나목)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사용자는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를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사용시에는”으로 한다.

(별표)의 회관사용료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영장 입장료

(단위 : 원)

개 인			단 체			회 원			비 고
일반	군 경 청소년	노 인 어린이	일반	군 경 청소년	노 인 어린이	일반	군 경 청소년	노 인 어린이	
2,500	2,000	1,300	2,000	1,500	1,000	40,000	30,000	20,000	1인1회 기준임

- 비 고 1.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는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경”은 정복을 착용한 군인과 경찰관을 말한다.
 4. “청소년”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교생과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12조(관람료등) ①~② (생략) ③ <u>사용자는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u>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총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전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총 관람수입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총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관람료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사용시에는</u> 제11조의 규정에 ----- ----- ----- ----- ----- ----- ----- ----- ----- ----- .								
(별표) 회관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생략) 나. 수영장 입장료 (단위 : 원)									(별표) 회관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현행과 같음) 나. 수영장 입장료 (단위 : 원)								
개 인			단 체			회 원			개 인			단 체			회 원		
일반	군 경 청소년	노 인 어린이	일반	군 경 청소년	노 인 어린이	일반	군 경 청소년	노 인 어린이	일반	군 경 청소년	노 인 어린이	일반	군 경 청소년	노 인 어린이	일반	군 경 청소년	노 인 어린이
2,000	1,500	1,000	1,500	1,300	1,000	25,000	20,000	15,000	2,500	2,000	1,300	2,000	1,500	1,000	40,000	30,000	20,000
비고. (생략) 다. 부대시설 사용료 (생략)									비고. (현행과 같음) 다. 부대시설 사용료 (현행과 같음)								